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70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정을호 · 한준호 · 김 윤
박상혁 · 박선원 · 김태선
최혁진 · 이병진 · 문정복
권칠승 · 김준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인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가 해당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

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및 통지)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여한 학위(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가 취소된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및 통지)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여한 학위(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u> <u>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u> <u>2.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u>

3.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
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설치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
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가 취소된 자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
학의 장에게 석사학위 취소 사
실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